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2시 34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보증금 납부	3

## 보증금 납부

2014.04.17 조회수 619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30
담당부서	특산물육성과
상위법령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
훈령	여수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규정 제8조
유형	4호 - 기타(부담금징수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<p>제8조(보증금 납부)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,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.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④도매시장법인인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도매업무를 할 수 없다.</p>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27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31 >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